

제23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의정
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
공포한다.

2024년 4 월 8 일

여 수 시 장 2024.4.8



여수시 조례 제2063호

붙임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063호

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여수시(이하 “시””를 “여수시의회(이하 “의회”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90만원”을 “120만 원”으로, “20만원”을 “30만 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여수시(이하 “시””를 “여수시의회(이하 “의회””로 하고,

② 월정수당은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「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각 항에 따라 공무로 여행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별표 5(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)를”을 “별표6(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)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공무원 여비규정」”을 “「공무원 여비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제7조로 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 (생 략)</p> <p>② 의정활동비는 <u>여수시(이하 “시”라고 한다)</u>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</p> <p>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 월 <u>90만원</u>, 보조활동비 월 <u>20만원</u>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여수시의회(이하 “의회”)</u>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<u>120만 원</u> ----- <u>30만 원</u>-----.</p>
<p>제4조(월정수당의 지급기준) ① (생 략)</p> <p>② 월정수당은 <u>여수시 소속</u>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</p>	<p>제4조(월정수당의 지급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여수시의회 소속</u> -----.</p>
<p>제5조(여비지급) ①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<u>제1항</u>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, 국외여비로 구분한다.</p>	<p>제5조(여비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「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각 항에 따라 공무로 여행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</p> <p>③ <u>제1항 및 제2항</u>-----.</p>
<p>제6조(여비지급기준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관련 <u>별표 5(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)</u>를 준용하되,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따른다.</p> <p>② 「<u>공무원 여비규정</u>」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.</p>	<p>제6조(여비지급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<u>별표6(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)</u>을 ----- -----.</p> <p>② 「<u>공무원 여비 규정</u>」 ----- -----.</p>
<p>제8조 (삭제 2013. 5. 3)</p>	<p>제8조 (삭제)</p>
<p>제9조 (생 략)</p>	<p>제7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</p>